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내

▶ 설치자

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반드시 설치검사를 완료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해야 합니다.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1항】

▶ 관리주체

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부과('12.1.27)에 따라 반드시 설치검사, 안전교육(2년1회), 보험가입, 안전점검(월1회) 등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※ 2008.1.27.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'15.1.26까지 연장

관리주체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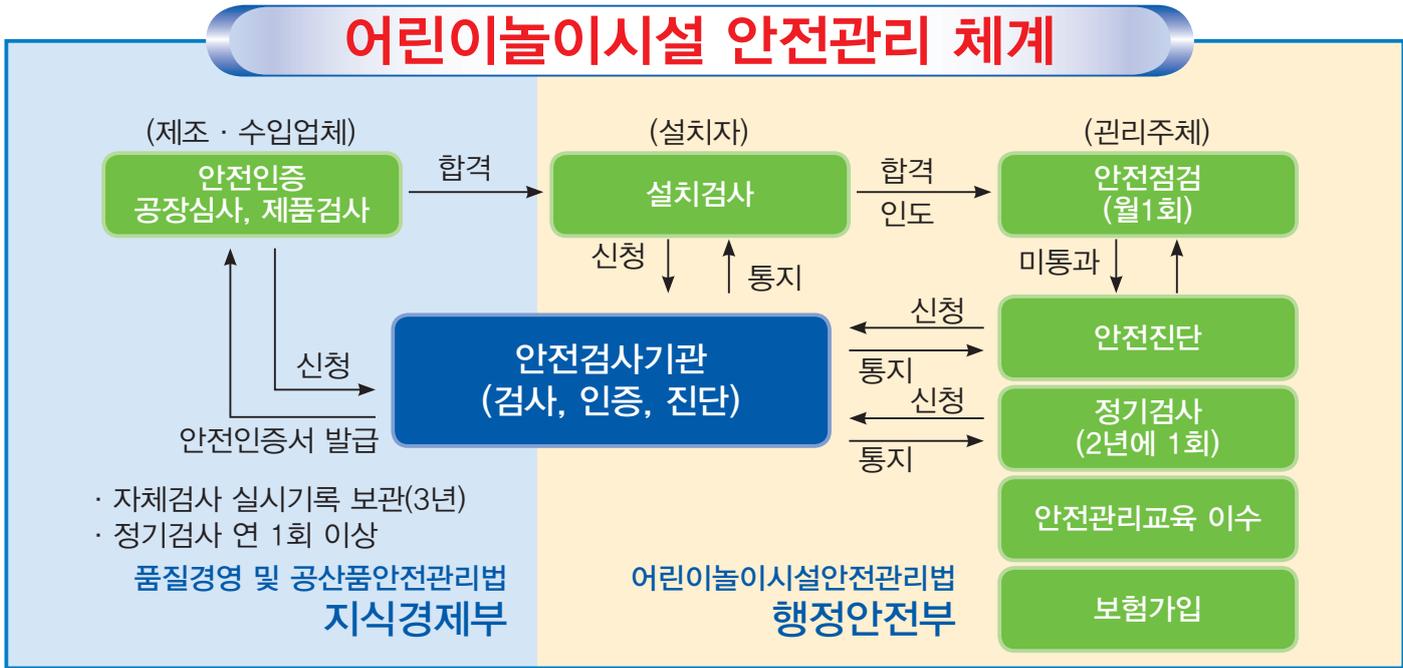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근거	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
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	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	법 제13조제1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	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	법 제13조제2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안전점검	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	법 제15조제1항	과태료 500만원
안전진단 신청	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- 이용 금지 -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	법 제15조제3항	과태료 400만원
점검결과의 기록·보관	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 기록·보관	법 제17조제1항	과태료 200만원
안전교육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.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	법 제20조	과태료 200만원
보험가입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	법 제21조	과태료 200만원
중대사고 발생 보고	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	법 제22조제1항	과태료 200만원
보고, 검사, 답변	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-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·보고	법 제23조	과태료 300만원
	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- 시설·서류·장부, 그 밖의 물건 검사 및 관계인에 대한 질문시 답변	법 제23조	과태료 300만원

어린이놀이시설 교육 및 검사기관 현황

2012. 10월 현재

구분	기관명	주요 기능	소재지
교육기관	(사)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	· 놀이시설 안전교육 ·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·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	서울시 중랑구 (02-493-0978)
교육기관	(사)한국생활안전연합	· 놀이시설 안전교육 ·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·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	서울 서초 (02-3476-0119)
교육기관	(재)한국재난안전기술원	· 놀이시설 안전교육 ·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·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	서울시 영등포구 (02-780-6326)
교육기관	(사)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	· 놀이시설 안전교육 ·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·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	서울시 구로구 (02-2635-3361)
교육 인정기관	(사)대한주택관리사협회	· 놀이시설 안전교육 · 주택관리사 보수교육	서울 영등포구 (02-882-0050)
검사·교육기관	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	· 놀이시설 안전검사·교육 · 건축자재, 생활·환경기기 등 시험·평가·인증	서울 금천 (02-2102-2500)
	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	· 놀이시설 안전검사·교육 · 기계, 전기, 전자, 유화 제품 등 시험·평가·인증	경기 성남 (031-785-1280)
	(사)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	· 놀이시설 안전검사·교육 · 비상대비·재난안전관리 정책연구 · 안전문화 선진화	서울 강남 (02,512-3780)
	(사) 대한산업안전협회	· 산업안전분야 기술지원, 교육 · 정부 및 공공기관 위탁·지정 안전관련 사업	서울 구로 (02-860-7000)

▶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



▶ 중대사고

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시·군 재난관리과 및 관련 실과에 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. 【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1항】

· 사망한 경우	· 출혈이 심한 경우
· 3명이상 동시부상을 입은 경우	· 신경·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
· 골절상을 입은 경우	·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
	· 내장이 손상된 경우

· 사고 발생일로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
·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% 이상인 경우

▶ 사고발생시 처리순서



사고발생(관리주체) ☞ 응급조치(119, 병원)
☞ 시·군 재난관리과 및 해당실과 ☞ 도 방호예방과
* 긴급 연락은 시·군 재난관리과 및 해당 실과소로 연락

▶ 관련자료 다운로드

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카페 : <http://cafe.naver.com/childrenplayground>

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어린이 놀이시설 자료실 : http://fire.gyeonggi.kr/fire_dev/

▶ 문의

“건강한 어린이 안전한 놀이시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”

경기도 방호예방과 ☎ 031-230-5842